



식품의약품안전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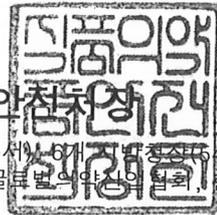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 일부 개정 고시 알림

1. 의약외품 마스크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자재인 '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' 규격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 동 개정 고시는 우리 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 → 법령·자료 → 법령정보 → 제·개정고시 및 고시·훈령·예규)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, 관련 단체(협회)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동 정보를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 일부개정고시(제2020-85호, 2020.9.9) 1부.
2.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 전문 1부. 끝.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

수신자 본부(52개 전부서),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(41개 전부서), 6개 지방청(5개 전부서), 7개 산하기관, 지방자치단체, 보건복지위원장, 한국제약바이오협회, 한국글로벌의약품협회, 한국 의약품수출입협회, 대한화장품협회

주무관	양석원	주무관	엄소영	의약외품정책과전결 2020.9.9.
			장	김춘래

협조자

시행 의약외품정책과-5694 (2020. 9. 9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/ www.mfds.go.kr

전화번호 043-719-3712 팩스번호 043-719-3700 / rainy0112@korea.kr / 대국민 공개

힘내라 대한민국!

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

1. 개정 이유

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 내 ‘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’ 기준 및 시험방법을 신규 수재하여 의약외품 제조·품질관리 현장의 활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

2. 주요 내용

‘의약외품 각조 제1부’에 ‘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’를 신설하여 품질관리를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(안 별표 2)

3. 기타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약사법」 제52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.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2) 행정예고('20. 8. 3 ~ '20. 8. 23) 결과, ‘액체저항성시험’의 검체 크기 변경

3) 규제심사 : 규제심사 비대상

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 - 85 호

「약사법」 제52조제2항에 따른 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-21호, 2020. 4. 2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9월 9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(안)

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2 의약외품각조 제1부에 ‘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’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

Polypropylene Filter Nonwoven Fabric

이 부직포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사용하는 필터이다. 이 부직포는 정전기 처리를 한 것으로서,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멜트블로운 장비로 방사한 후 포상으로 만든 것이다. 또한, 스폰본드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으며, 접착제와 향료 등은 사용할 수 없다.

성 상 이 부직포는 섬유는 탈락이 거의 없는 흰색의 포(布)로서 냄새는 없다. 또한, 이 부직포는 청결하고 자극성이 없으며 이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.
순도시험 1) 색소 「부직포」의 순도시험 중 1)색소에 따라 시험한다.

2) 산 또는 알칼리 「부직포」의 순도시험 중 2)산 또는 알칼리에 따라 시험한다.

3) 형광증백제 「부직포」의 순도시험 중 3)형광증백제에 따라 시험한다.

회 분 「부직포」의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.

포름알데히드 「부직포」의 포름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.

강 도 「부직포」의 강도에 따라 시험한다.

액체저항성 이 부직포를 유리용기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자른 검체 5 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시험할 때 각각은 적합하다. 원통 모양의 250 mL 유리용기 (직경 70 mm × 높이 95 mm) 에 물 10 mL 을 넣은 다음 그 위에 검체를 고무줄 등 기타도구를 이용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고정시킨 후 유리 용기를 뒤집어서 바닥에서 일정 높이의 공간을 두고 고정한다. 유리 용기 아래에 유리판을 놓고 30 분간 방치할 때 물이 검체를 통과하여 하단 유리에 떨어지지 않는다.

세균여과효율 이 부직포를 다음과 같이 세균여과효율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시험할 때 개개의 세균여과효율은 95 % 이상이다.

- 검체 준비: 부직포를 10 x 10 cm 로 잘라 각각 5 개를 준비하고, 21 ± 5 °C, 상대습도 85 ± 5 % 의 환경에 4 시간 이상 방치하여 검체로 한다.
- 황색포도상구균 세균현탁액 제조: 미생물한도시험법에서 정한 황색포도상구균 (*Staphylococcus aureus*)을 대두카제인소화액체배지 30 mL 가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접종하여, 37 ± 2 °C 에서 24 ± 2 시간 동안 배양한다. 배양 후 황색포도상구균을 미생물한도시험법의 펌프염화나트륨완충액으로 희석하여 약 5×10^5 집락수(CFU) / mL 의 농도가 되도록 한다. 단, 시험 중 조작조건에 맞도록 황색포도상구균 현탁액을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- 배지 : 시험에 사용하는 배지는 미생물한도시험법의 대두카제인소화한천배지로 한다.
- 조작조건 : 각 시험 당 황색포도상구균수는 2200 ± 500 집락수(CFU) 를 유지하며, 평균 입경은 3.0 ± 0.3 μm 이다. 펌프 유량은 28.3 L/분 이다.

양성대조군 a, 시험군, 양성대조군 b, 음성대조군 순으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.

- 양성대조군 a : 황색포도상구균 세균현탁액을 펌프 또는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분사기에 넣는다.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에 배지를 넣은 다음, 검체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에어로졸 발생기와 진공펌프를 작동시킨다. 에어로졸 발생기는 1 분간 작동하며 동시에 다단세균포집장치를 2 분간 작동한다. 시험종료 후 다단세균포집장치에서 배지를 꺼내고, 다단세균포집장치에 장착되었던 배지에 해당 층수를 표시하여 양성대조군 a 로 한다.
- 시험군 :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별로 해당 위치에 새로운 배지를 넣은 후, 검체를 장착하고 위의 과정을 반복 시행하여 시험군으로 한다.

- 양성대조군 b : 시험군 시험이 끝난 후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별로 해당 위치에 새로운 배지를 넣은 후, 검체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험하여 양성대조군 b로 한다.
- 음성대조군 :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별로 해당 위치에 새로운 배지를 넣은 후, 황색포도상구균 에어로졸을 발생시키지 않고 진공펌프만을 2 분간 작동시켜 다단세균포집장치를 가동한 것을 음성대조군으로 한다.

모든 시험이 완료된 양성대조군 a, 시험군, 양성대조군 b, 음성대조군의 배지를 $37 \pm 2 \text{ }^\circ\text{C}$ 배양기에서 48 ± 4 시간 동안 배양 후 모든 층의 균 집락수를 측정하여 각각의 균 집락수로 한다. 다음 계산식에 따라 세균여과효율(%)을 구한다. 이 때 음성대조군으로 보정한다.

단, 음성대조군의 균 집락수는 양성대조군 a 와 양성대조군 b 의 평균 균 집락수에 대하여 1 % 이하이다. 시험에 분사하는 황색포도상구균 세균현탁액 에어로졸의 평균 입경은 양성대조군 a 의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별 균 집락수를 측정하여 계산한다.

$$B = \frac{(C - T)}{C} \times 100$$

여기서 B : 세균여과효율 (%)

C : 양성대조군 a 과 양성대조군 b 의 평균 균 집락수

T : 시험군에서 측정된 총 균 집락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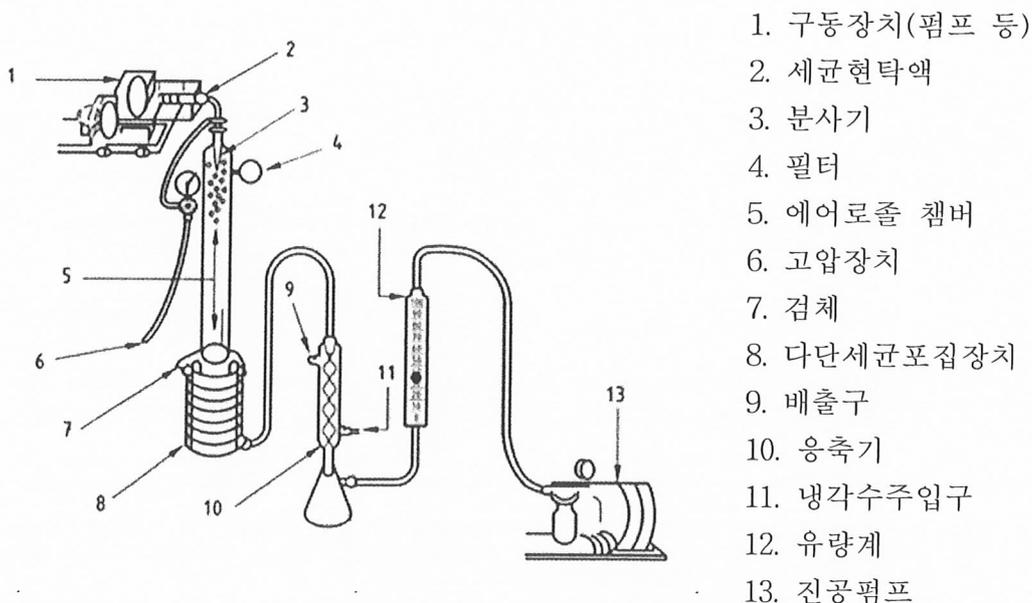


그림. 세균여과효율 시험장치 예시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고시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자가 수입한 의약외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의약외품 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제조·수입품목 허가신청서, 품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서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. 다만, 의약외품 마스크 중 필터 규격을 이 고시 ‘부직포’항으로 신청한 품목은 허가 이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필터 규격을 ‘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’항으로 변경하고, 변경된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품목은 허가증 이면에 원료약품 및 그 분량, 제조방법 등의 변경항목과 “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(고시번호)”를 기재하고 허가증 원본에 변경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보관 관리하여야 한다.

제4조(의약외품 허가 품목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은 품목 중 의약외품 마스크의 필터 규격을 이 고시 ‘부직포’항으로 허가받은 품목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‘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’항으로 변경하고, 변경된 규격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「약사법」 제76조제1항 및 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3항제7호에 따라 제1항에 해당하는 품목은 허가증 이면에 원료약품 및 그 분량, 제조방법 등의 변경항목과 “「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」(고시번호)”를 기재하고 허가증 원본에 변경된 내용을 첨부한 후 자체보관 관리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[별표 2] 의약외품각조 제1부 「약사법」 제2조제7호가목 (제2조제2호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 신 설 ></u></p>	<p>[별표 2] 의약외품각조 제1부 「약사법」 제2조제7호가목 (제2조제2호 관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폴리프로필렌 필터 부직포</u> Polypropylene Filter Nonwoven Fabric</p> <p><u>이 부직포는 의약외품 마스크에 사용하는 필터이다. 이 부직포는 정전기 처리를 한 것으로서, 폴리프로필렌 수지를 멜트블로운 장비로 방사한 후 포상으로 만든 것이다. 또한, 스폰본드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으며, 접착제와 향료 등은 사용할 수 없다.</u></p> <p><u>성 상 이 부직포는 섬유의 탈락이 거의 없는 흰색의 포(布)로서 냄새는 없다. 또한, 이 부직포는 청결하고 자극성이 없으며 이 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.</u></p> <p><u>순도시험 1) 색소 「부직포」의 순도시험 중 1)색소에 따라 시험한다.</u></p> <p><u>2) 산 또는 알칼리 「부직포」의 순도시험 중 2)산 또는 알칼리에 따라 시험한다.</u></p> <p><u>3) 형광증백제 「부직포」의 순도시험 중 3)형광증백제에 따라 시험한다.</u></p> <p><u>회 분 「부직포」의 회분에 따라 시험한다.</u></p> <p><u>포름알데히드 「부직포」의 포름알데히드에 따라 시험한다.</u></p> <p><u>강 도 「부직포」의 강도에 따라 시험한다.</u></p> <p><u>액체저항성 이 부직포를 유리용기를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적당한 크기로 자른 검체 5 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시험할</u></p>

때 각각은 적합하다. 원통 모양의 250 mL 유리용기 (직경 70 mm × 높이 95 mm) 에 물 10 mL 을 넣은 다음 그 위에 검체를 고무줄 등 기타도구를 이용하여 물이 새지 않도록 잘 고정시킨 후 유리 용기를 뒤집어서 바닥에서 일정 높이의 공간을 두고 고정한다. 유리 용기 아래에 유리판을 놓고 30 분간 방치할 때 물이 검체를 통과하여 하단 유리에 떨어지지 않는다.

세균여과효율 이 부직포를 다음과 같이 세균여과효율 시험장치를 이용하여 시험할 때 개개의 세균여과효율은 95 % 이상이다.

○ 검체 준비: 부직포를 10 x 10 cm 로 잘라 각각 5 개를 준비하고, 21 ± 5 °C, 상대습도 85 ± 5 % 의 환경에 4 시간 이상 방치하여 검체로 한다.

○ 황색포도상구균 세균현탁액 제조: 미생물한도시험법에서 정한 황색포도상구균(*Staphylococcus aureus*)을 대두카제인소화액배지 30 mL 가 들어있는 플라스크에 접종하여, 37 ± 2 °C 에서 24 ± 2 시간 동안 배양한다. 배양 후 황색포도상구균을 미생물한도시험법의 펩톤염화나트륨완충액으로 희석하여 약 5×10^5 집락수(CFU) / mL 의 농도가 되도록 한다. 단, 시험 중 조작조건에 맞도록 황색포도상구균 현탁액을 희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○ 배지 : 시험에 사용하는 배지는 미생물한도시험법의 대두카제인소화한천배지로 한다.

○ 조작조건 : 각 시험 당 황색포도상구균 수는 2200 ± 500 집락수(CFU) 를 유지하며, 평균 입경은 $3.0 \pm 0.3 \mu\text{m}$ 이다. 펌프 유량은 28.3 L/분 이다.

양성대조군 a, 시험군, 양성대조군 b, 음

성대조균 순으로 다음과 같이 시험한다.

○ 양성대조균 a : 황색포도상구균 세균 현탁액을 펌프 또는 주사기 등을 이용하여 분사기에 넣는다. 다단세균포집 장치의 각 층에 배지를 넣은 다음, 검체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황색포도상구균 에어로졸 발생기와 진공펌프를 작동시킨다. 에어로졸 발생기는 1 분간 작동하며 동시에 다단세균포집장치를 2 분간 작동한다. 시험종료 후 다단세균포집장치에서 배지를 꺼내고, 다단세균포집장치에 장착되었던 배지에 해당 층수를 표시하여 양성대조균 a 로 한다.

○ 시험균 :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별로 해당 위치에 새로운 배지를 넣은 후, 검체를 장착하고 위의 과정을 반복 시행하여 시험균으로 한다.

○ 양성대조균 b : 시험균 시험이 끝난 후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별로 해당 위치에 새로운 배지를 넣은 후, 검체를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시험하여 양성대조균 b로 한다.

○ 음성대조균 : 다단세균포집장치의 각 층별로 해당 위치에 새로운 배지를 넣은 후, 황색포도상구균 에어로졸을 발생시키지 않고 진공펌프만을 2 분간 작동시켜 다단세균포집장치를 가동한 것을 음성대조균으로 한다.

모든 시험이 완료된 양성대조균 a, 시험균, 양성대조균 b, 음성대조균의 배지를 37 ± 2 °C 배양기에서 48 ± 4 시간 동안 배양 후 모든 층의 균 집락수를 측정하여 각각의 균 집락수로 한다. 다음 계산식에 따라 세균여과효율(%)을 구한다. 이 때 음성대조균으로 보정한다.

단, 음성대조균의 균 집락수는 양성대조균 a 와 양성대조균 b 의 평균 균 집락수

에 대하여 1 % 이하이다. 시험에 분사하는 황색포도상구균 세균현탁액 에어로졸의 평균 입경은 양성대조군 a 의 다단세균포 집장치의 각 층별 균 집락수를 측정하여 계산한다.

$$B = \frac{(C - T)}{C} \times 100$$

여기서 B : 세균여과효율 (%)

C : 양성대조군 a 과 양성대조군 b 의 평균 균 집락수

T : 시험군에서 측정된 총 균 집락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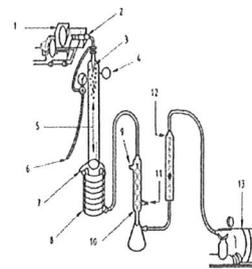
- 
1. 구동장치(펌프 등)
 2. 세균현탁액
 3. 분사기
 4. 필터
 5. 에어로졸 챔버
 6. 고압장치
 7. 검체
 8. 다단세균포 집장치
 9. 배출구
 10. 응축기
 11. 냉각수주입구
 12. 유량계
 13. 진공펌프

그림. 세균여과효율 시험장치 예시

저 장 법 밀폐용기